

의안 번호	704
----------	-----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6. 25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7. 2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7. 13

2.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나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대상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1)

- 가. 개별기준 위반사항 부과금액 상향조정(법 제9조제2항 부터 제4항까
지, 법제28조 위반)
 - 1차 “경고”에서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2차 “20만원”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3차 “5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 4차 “100만원”은 삭제
- 나. 개별기준 위반사항 부기대상 및 부과금액 일부 신설(법 제23조제2항 위반)
 - 대상 :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 금액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 근거법규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2122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의견없음(2009. 5. 18 ~ 6. 7)

6.검토의견 :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이 법 위반자 등에 대한 대상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과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근거 법령	부과대상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근거 법령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근거 법령	위반대상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차	2차	3차 이상
국민건강 증진법 (제34 조 제1항 내지 제2항)	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경 고 (시 정)	20	50	100	국민건강 증진법 (제34 조 제1항 내지 제2항)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00	200	300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경 고 (시 정)	20	50	100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u><신설></u>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00	200	300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경 고 (시 정)	20	50	100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	100	200
	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경 고 (시 정)	20	50	100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20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경 고 (시 정)	20	50	100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	100	200	
(주) 1. 위반행위가 20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_____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고 _____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범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_____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 기간이 _____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이 처분 등)은 양수인, _____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일반기준) 가. 부과처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_____ 침착하여 _____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